

제 1115호
1985. 6. 1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문관
편집인 : 공문서관 조남호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시보

차례

◎ 고 시

제 398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변경 3

제 399 호 : 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3

제 400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4

◎ 사 령

포											
합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98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변경

- 1. 서울특별시고시제 532 호 (84.9.4) 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된 장로회 신학대학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6 조 및 제 27 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6. 19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성동구광장동 339일대
- 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장로신학대학 시설확충다. 사업시행 규모

1) 사업시행면적 : 53,610 ㎡

2) 사업내역

가) 당 초

• 건축면적 : 637.35 ㎡

• 연 면 적 : 2,505.05 ㎡

• 동 수 : 1동신축

• 층 수 : 지하 1층, 지상 4층

• 용 도 : 훈련원 (기숙사)

나) 변 경

• 건축면적 : 637.35 ㎡

• 연 면 적 : 2,843.33 ㎡

(증 338.28 ㎡)

• 변경내용 : 3,4층증축

(169.14 ㎡ × 2개층)

• 용 도 : 훈련원 (기숙사)

라. 사업시행자 : 성동구광장동 353 학교법인 장로신학대학이사장박조준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1)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

2) 준공예정일 : 1985.12.30

바. 위취도및평면계획도 : 별첨 (생략)

사. 사용할 토지 : 별첨 (생략)

아. 토지소유자 : 학교법인 장로회 신학대학이사장 (수용할 토지없음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99 호

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변경결정및지적승인

-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12조, 제 13 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제 7조의 2 및 제 6 조와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제 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1985. 6. 19

서울특별시장

○ 고속철도(부대시설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						
구분	정차장	위 치	쪽	연장	면적(㎡)	비 고
기정 변경	옥수	옥수동 369부근	17	205	4,000 4,771	출입구, 정좌조 각 1개 신설
기정 변경	압구정	압구정동산 42의 3부근	23	206	5,800 5,767	환기소 1개소 위치변경
기정 변경	동작	동작동 126- 5부근	20	205	4,200 4,687	출입구위치 및 시행선변경
기정 변경	사당	사당동 581의 1부근	22	207	4,700 4,954	출입구 2개소 추가
○ 별첨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						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00 호</p> <p>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</p> <p>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시행령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</p> <p>1985. 6. 19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		<p>다 음</p> <p>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</p> <p>2. 사업주체 : 한일은행직원주택조합 조합장이든남</p> <p>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</p> <p>가. 위치 : 영등포구 대림동 667-2 의 46 필지</p> <p>나. 면적 : 32,024.7 ㎡</p> <p>다. 규모 : 아파트 12층, 14층 688세대</p> <p>상가 3층 1동 및 부대부리시설</p> <p>라. 사업시행기간 : 1985.6 - 1986.9</p>		

사 령

◎ 1985 년 6 월 19 일 자

령 제 202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정 태 산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권 책에 처함	서동구 주택과	지방행정사무관
황 인 문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 봉 3 월에 처함	도봉구 주택과	지방행정사무관
김 현 식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권 책에 처함	용산구 민방위과	지방행정사무관
최 친 주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권 책에 처함	관악구 수도관리과	지방행정사무관
송 기 문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권 책에 처함	민방위국 민방위과	지방행정사무관

시 율 특 별 시 장